

#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75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 위탁사무는 「아동복지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
- 나.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운영컨설팅, 종사자 교육, 자원연계, 시설평가지원 및 행정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노하우 등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
- 나. 근거 및 필요성
  - 추진근거 :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  - 위탁 필요성 : 수탁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을 토대로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연계하여,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
- 지역아동센터 외부 결연·협약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
-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운영·지원
- 지역 특성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조사연구
- 시 특성화 시책사업 지원
-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추진업무 지원
- 지역아동센터 평가 지원 등

라. 위탁기간 : 3년(2021.1.1. ~ 2023.12.31.)

마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

바. 소요예산

- 소요예산 : 329,600천원(2021년 예산요구액 기준)
- 산출근거 : 인건비 216,753천원, 운영비 49,845천원, 사업비 62,984천원

사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○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

제7조(비용의 지원)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센터 사업비
2.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
3.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
4. 센터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
5.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나. 예산조치 : 2021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아이돌봄담당관 온마을돌봄추진반 돌봄운영팀 조근희 (☎ 2133-4945)